

의안번호	2205840
의 퇴 인	윤종오의원
회 답 일	2024.12.19.
추 계 번호	24D5350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3(적정임대료) 신설	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함)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 유형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적정임대료를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조의4(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) 신설	적정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함)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두며, 산정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	의무규정
3	안 제7조의5(주택임대차 정보 체계) 신설	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임대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, 주택의 위치와 종류, 면적, 구조, 성상 등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주택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구축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3(적정임대료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의4(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) 신설	
3	안 제7조의5(주택임대차 정보 체계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적정임대료 작성·고시 및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(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임대료를 작성하여 고시하고, 적정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기 위해 시·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, 기타 위원의 임기·자격·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, 이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주택임대차 정보 체계(안 제7조의5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주택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구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주택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, 이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－ 참고로,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개정안과 유사한 사업으로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, 지방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, 부동산종합정보체계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] 표준지공시지가·표준주택가격 공시, 지방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,
부동산종합정보체계 관련 사업 예산(2024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4년 예산 편성액
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	77,983
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	16,532
지방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수당	350
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	1,322

자료: 국토교통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